

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

(의안번호 제62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6. 1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6. 1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6. 10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정사유

- 치매·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치매전문요양원의 운영내용 (안 제4조)
- 치매전문요양원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(안 제5조)
-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(안 제7조)
- 치매전문요양원 수탁자의 의무 (안 제10조)
- 위탁의 취소사유 (안 제11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치매,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기 의회에 승인된 예산으로 설치된 치매전문 요양원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소대상, 입소비용, 위탁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

-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사례인 만큼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군비 예산지원, 국고보조, 소요 관리 인력, 환자 수용인원 및 위탁방안 등 충분한 설명을 요한 후 심의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※ 사업개요

- 건축면적 : 1,699㎡(514평)
- 사업비 : 1,732,563천원(국비 758,142천원, 도비 379,071천원, 군비 595,350천원)
- 수용인원 : 64명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향후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여 추진할 것이며, 군 재정을 감안 군비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
- 답 : 운영비중 국고 70%, 지방비 30%로 확보 운영할 계획이며, 일부 부족한 운영비는 유료운영, 기탁금 등으로 군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음.
- 문 : 치매, 중풍 등 각각 전문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질병을 통합하여 요양하는 이유는
- 답 :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.
- 문 :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고성군재정상 현 실정에는 이르다고 보며, 인근 마산시 등에서 추진한 사례로 생활보호대상자 등 모집기준의 제한으로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
- 답 : 군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모집기준 등 현실정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6.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